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권영진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 · 강선영 · 강승규

고동진 • 곽규택 • 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김 건

김기웅 · 김기현 · 김대식

김도읍 · 김미애 · 김민전

김상욱 · 김상훈 · 김석기

김선교 • 김성원 • 김소희

김승수 · 김예지 · 김용태

김위상 · 김은혜 · 김장겸

김재섭 · 김정재 · 김종양

김태호 · 김형동 · 김희정

나경원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· 서명옥 ·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 유상범 • 유영하 • 유용원 윤상현 · 윤영석 · 윤재옥 유한홍 · 이달희 · 이만희 이상휘 · 이성권 · 이양수 이인선 · 이종배 · 이종욱 이철규 · 이헌승 · 인요한 임이자 · 임종득 · 장동혁 정동만 · 정성국 · 정연욱 정점식 · 정희용 · 조경태 조배숙・조승환・조은희 조정훈 · 조지연 · 주진우 주호영 · 진종오 · 최보윤 최수진 · 최은석 · 최형두 추경호 • 한기호 • 한지아 의원(108인)

제안이유

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,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,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(안 제3조).
- 나.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,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 를 확대함(안 제13조제3항).
- 다.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4조제5항).
- 라.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- 마.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.
- 바.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,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·공매 유예 협조

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·제18조·제19조·제26조).

- 사.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(안 제20조제3항·제21조제3항·제22조제3항).
- 아.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,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(안 제25조·제25조의3).
- 자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 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 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(안 제25조의2 신설).
- 차.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3 신설).
- 카.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 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5 신설).
- 타.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(안 제25조의6 신설).

- 파.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 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(안 제25조의7 신설).
- 하.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 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5조의8 신설).
- 거.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(안 제27조).
- 너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 신설).
- 더.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 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(안 제28조의3 신설).
- 러.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의2 신설).
- 머.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(안 제30조).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나목 중 "임차인"을 "자"로, "제외한다)"를 "제외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"를 "충족하고,"로, "포함한다)받고"를 "포함한다)받았으며"로, "하였으며"를 "하고"로, "제외한다)"를 "제외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"특정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 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
 -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

다.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

제3조제1항제1호 중 "마친"을 "마친 경우 또는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"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"전세사기피해자"를 각각 "전세사기피해자등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전세사기피해자"를 "전세사기피해자등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중 "공인된"을 "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학교나 공인된"으로 한다.

1의2.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3조제3항제1호 중 "현황 및 권리관계"를 "현황, 권리관계 및 배당액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대부업자·대부중개업자"를 "대부업자·대부중개업자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"여부"를 "여부, 처분 결과"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: 국토교통부
-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

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(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)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- 제15조의2(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
 - 2.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대 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 주택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임 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3.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
 - 4. 결정을 받은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로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

- 5.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.
- ③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취소 또 는 철회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부동산정보체계"를 "부동산정보체계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"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경우"를 "경우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
- 2.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 경우
 - 2.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·의결을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
- 2.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

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따라 경매하는"을 "따라 경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"으로, "같은 법 제113조에"를 "「민사집행법」 제113조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매수하게 한다.

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.

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공공주택사업자"를 "공공주택사업자(이하 "공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수 있다"를 "수 있고, 전세사기피해자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12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전세사기피해주택"을 "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전세사기피해주택"으로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,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중인 경우 법원,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「주택도시

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으로 지워한다.

-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 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직장 이전, 질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1.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제4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,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
- 2.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
- ⑨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10년 연장
- 2.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
-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 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 할 수 있다.

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2(공공임대주택 지원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수 있고, 전세사기피해자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.
 - 1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
 - 2.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
 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을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,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5조의3(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) ① 「신탁법」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(이하 "신탁사기피해자"라 한다)은 해당 주택(이하 "신탁사기피해주택"이라한다)의 수익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.
 - ③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하여는 제25조제5 항부터 제9항까지, 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전세사기피해자"는 "신탁사기피해자"로, "전세사기피해주택"은 "신탁사기피해주택"으로 본다.
- 제25조의4(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)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(이하 "전세사기피해주택등"이라 한다)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25조의5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) ① 제25조 또

- 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(제25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보전비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또는 신탁사기피해자(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보전비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.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에 한정한다.
- ③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각기준, 매각가격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「건축법」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명령,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제85조에

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.

-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의 매입을 요청받아 매입하려는 해당 건축물이 특정건축물(이하 "대상건축물"이라한다)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(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자기 소유의 대지(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) 또는 국유지·공유지(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
- 2. 「건축법」 제44조, 제46조 및 제47조(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 미터로 한다. 이하 같다)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·위생·방화 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(日照權) 향유에

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
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(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에 한정한다)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용도변경 신고 수리(受理)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「주차장법」 제19 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공공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-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매입한 대상건 축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

한다.

- 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의7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적용의 일부 배제)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주택임대 차보호법」 제3조의5의 단서 및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의8(임차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)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다.

제26조제1항 중 "경매나"를 "경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나"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"유예"를 "유예하거나 삭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.

제4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)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공동 주택관리법」 제34조를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28조의3(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관한 특례) 전세 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2호 및 「지방 공무원법」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, 「민사집행법」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현황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장, 금융기관등(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제30조 전단 중 "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"을 "주택도시보증공사,"로, "자는"을 "자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
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"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2, 제25조, 제25조의2, 제25조의3,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 부터 기산한다.
- 제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,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전세사기피해자등"이란 다	4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를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3조제1항제1호・제3호	나
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	
충족하는 <u>임차인</u> (같은 조	<u>자</u>
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는 <u>제외</u>	제외
한다)	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
	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
	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국
	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
	<u>차인</u>
다.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	다
호의 요건을 모두 <u>충족하</u>	<u>충족하</u>
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	<u> </u>
(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	
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	
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	
한다)을 인도(인도받았던	

경우를 <u>포함한다)받고,</u>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<u>하였으</u> 면, 그 임대차계약증서상 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(제 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<u>제</u>외한다)

 5. (생 략)

 <신 설>

<u>포함한다)받았으</u>
<u> 며</u>
<u>하고</u> -
<u>제</u>
외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
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국
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
차인

- 5. (현행과 같음)
- 6. "특정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.
 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 거나 대수선한 건축물
 -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

- 제3조(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) ① 저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(자연인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.다만,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.
 - 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(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것으로 본다) 같은 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(이하 "확정일자"라 한다)를 갖출 것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3에

<u>건죽하거나 대수선한 건죽</u>
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
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
한 건축물
다.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
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
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
아니한 건축물
·
1

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도 포함한다)

- 2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4조(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) 국 제4조(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) --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피해자등 ------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대책
 - 4.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
 - 5.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
 - 6. (생략)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) 제6조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)
 - ① (생략)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			<u>마친</u>	경	<u>우</u>
또는	「민법」	제.	303조	케	따
른 전	세권이 실	설정된	린		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전세사기피해자등-----
- 4. 전세사기피해자등--
- 5. 전세사기피해자등-----
- 6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

- -- 전세사기피해자등-----
- - ① (현행과 같음)

- 을 심의·의결한다. 1. (생 략)
- <신 설>
- 2. ~ 4.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이상 임명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법학·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<u>공인된</u>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3. ~ 10. (생 략)
- ⑤ ~ ⑫ (생 략)
- 제13조(피해사실의 조사) ①·② (생 략)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
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
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4
1. (현행과 같음)
2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
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
학교나 공인된
3. ~ 10. (현행과 같음)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에13조(피해사실의 조사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③

라 국가기관, 공공기관, 금융기 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- 1. 주택 매각 절차의 <u>현황 및 권</u> 리관계: 법원, 「한국자산관리 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 산관리공사(이하 "한국자산관 리공사"라 한다)
- 2. ~ 8. (생략)
- 9.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, 압류,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: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기관,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및예금보험공사,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한국자산관리공사, 「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・대부중개업자 및 그

<u>.</u>
1 현황, 권리
<u>관계 및 배당액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9
<u>대</u>
부업자·대부중개업자, 「신
<u>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</u>

률에 따라 금융업무 등을 하 는 기관

10.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10. -----여부 및 피해자 현황: 검찰청, 경찰청

11. (생략)

<신 설>

12. (생 략)

④ ~ ⑥ (생 략)

- ① ~ ④ (생 략)
- 심의 ·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 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 ----

- 여부, 처분 결과 -----
-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」 제60조에 따른 임대주 택 정보에 관한 사항: 국토교 통부
- 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 제14조(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) 제14조(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)
 -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│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 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 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 항에 따른 추가 조사(제15조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 • 의결을 거치

⑥ ~ ⑨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지 아니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 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)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제15조의2(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
- 2.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와 제25조 또는 제25조의 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합하여 임차보증

<u>금</u> 전액을 회수한 경우를 포 함한다)

- 3.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 에 해당하는 경우
- 4. 결정을 받은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로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 처장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장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.

- 제16조(정보체계의 구축·운용 제16조(정보체계의 구축·운용 등) ①·② (생 략)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<u>부동산정</u>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- 제17조(경매의 유예·정지)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「민사집행법」 제78조 또는 같은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·정지(이하 "경매유예등"이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7110-17 17 10
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부동산정</u>
보체계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
한 특별법」 제60조에 따른 임
대주택정보체계
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경매의 유예·정지) ①
경우(「채무자 회생
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
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
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
<u>다)</u>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
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 경

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- 제18조(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·정 지)①(생략)
 - 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세 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우

- 2.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
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
 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
 긴급한 경우
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 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 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·정 지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 우
 - 2.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

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제19조(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·중 지)①(생략)

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는 긴급한 경우
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 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 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·중 지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.
 - 1.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 오
 - 2.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
 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
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
 는 긴급한 경우
 - ③ ④ (현행과 같음)
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

제20조(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권)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경매하 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 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 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 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 <신 설>

③ (생략) 제21조(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 제21조(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

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 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·의결을 받아야 하며,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제20조(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궈) ① ---------- 따라 경매 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하는 -----------「뭐사 집행법 | 제113조에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 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 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 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22조(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) ① ·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③ (생 략)

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 기피해주택 매입) ① 전세사기 피해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 하게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2조(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) ① 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 를 마쳤을 때에는 전세사기피해 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을 매수하게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5조(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)①-----

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u>공공주택사업자</u>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 택사업자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법」 또 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 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「공공주 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 되,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

공공주택사업자(이하 "공
공주택사업자"라 한다)
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
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
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
주택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
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예
•정지,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
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
중지 중인 경우 법원, 관할 세무
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
게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
<u>다.</u>
<u>4</u>

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- <u>수 있고, 전</u> <u>세사기피해자는 10년간 거주할</u> <u>수 있다</u>.

⑤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 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 기금"이라 한다)으로 지원한다.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3조 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 었을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 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 료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에 따른 거주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

<신 설>

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장 이전, 질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1.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중 제4항에 따라 공 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, 제 6항 및 제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
- 2.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차감한 금액
- ⑨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10년 연장

④·⑤ (생 략)

준,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신 설>

- 2.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10년 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
-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민사집행 법」에 따른 경매, 「국세징수 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 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 다.
- ① · ②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- 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 ②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, 전세사기피해주택
 - 제25조의2(공공임대주택 지원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 급할 수 있고, 전세사기피해자 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.
 - 1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 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 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

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<u>못한</u> 전세사기피해자

- 2.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 인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주택에 거주기간을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,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5조의3(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) ① 「신

<u><신</u> 설>

탁법」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(이하 "신탁사기피해자"라 한다)은 해당 주택(이하 "신탁사기피해주택"이라 한다)의 수익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와사전에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.

③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관하여는 제25 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, 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전세사기피해자"는 "신탁사기 피해자"로, "전세사기피해주택" 은 "신탁사기피해주택"으로 본 다.

제25조의4(공공주택사업자의 책 무)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

<신 설>

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 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(이하 "전세사기피해 주택등"이라 한다)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제25조의5(공공주택사업자의 전 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) ① 제2 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 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 공주택사업자는 「공공주택 특 별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 해자(제25조제8항에 따라 공공 주택사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보전비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신탁사기피해자(제25조의3제3 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 터 임차보증금 보전비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.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 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

기피해자에게 「공공주택 특별 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 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 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 경과한 주택을 매각할 수 있 다. 이 경우 매각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에 한정한다. ③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각기준, 매각가격 및 매 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 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 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 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 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 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「건축법」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명령, 제80조에

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제8 5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다.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

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의 매 입을 요청받아 매입하려는 해당 건축물이 특정건축물(이하 "대 상건축물"이라 한다)이면 공공 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 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 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 (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은 제 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건축 법」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 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「건축법」 제4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

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하여 야 한다.

- 1. 자기 소유의 대지(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) 또는 국유지·공유지(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
- 2. 「건축법」 제44조, 제46조 및 제47조(해당 규정의 적용 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 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 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 다. 이하 같다)를 위반하지 아 니하고 구조안전·위생·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(日照權) 향유 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 물일 것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

은 대상건축물(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에 한정한다)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용도변경 신고 수리(受理)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 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고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① 제6항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 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공공주택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 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.

8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매입한 대상건축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7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적용의 일부 배제) 공공주택사 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 5의 단서 및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의8(임차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) 제25조 또는 제25조 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 제26조(경매 및 공매의 지원) ①
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
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「민사집
행법」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
264조에 따른 경매나 「국세징
수법」 제64조 또는 「지방세징
수법」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
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
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27조(금융지원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.

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다.
제26조(경매 및 공매의 지원) ①
경매(「채무자 회
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
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
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
한다)나
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금융지원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유예하거나 삭제-

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 <신 설> 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 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 에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 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 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. <신 설> 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)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 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 34조를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신 설> 제28조의3(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관한 특례)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2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 설> 제29조의2(자료의 협조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 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

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

기피해자등 지원 현황, 「민사 집행법 |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(「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」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 및 「국세징수 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,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금융기관 등(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금융 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 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제30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

국토교통부장관(제29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 은 기관을 포함한다), <u>주택도시</u> 보증공사 또는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 영하는 <u>자는</u> 조사 및 지원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 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 등 개 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· 이용·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주택도시
보증공사,
<u>자 또는「신용정보의 이</u>
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
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
관은